

일본	2015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 3차)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(2015년 9월 18일)/ 도쿄 aT센터

구분	핵심 내용
(잔류농약)	☐ “한국산 대과 토마토 잔류농약 위반 연속검출” (2015.9.16.일자 후생노동성 제공 자료)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
☐ 주요 내용

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산 대과토마토에서 잔류농약인 플루킨코나졸 성분이 위반되어 폐기 및 반송조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연속 2건 발생함
- 한국산 대과 토마토는 현재 플루킨코나졸 성분에 대해 매회 통관시 마다 검사후 합격시 한해 통관이 가능한 명령검사 상태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
- 잔류농약 위반 사례내용

품 명	신선 대과토마토		비 고
수입자	난큐	마루모토	
수출자	운봉농협	경북통상	
수입중량	1.4톤(348상자)	0.8톤(200상자)	
검사결과	플루킨코나졸0.04ppm	플루킨코나졸0.03ppm	기준치 0.01
검사일	2015.9.16	2015.9.15	
수입항구	하카타항	시모노세키항	
조치상황	폐기 또는 반송조치	폐기 또는 반송조치	전량보관중

☐ 시사점 / 대처 방향

- 동일품목에 대해 동일성분의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계속될 경우 일본정부는 해당품목의 잠정 수입보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향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됨
- ※ 과거 파프리카의 경우 잠정 수입보류 조치를 취하고 2국간 협의에 들어간 사례가 있음
- 한일간 잔류농약 분석방법 차이에 따른 문제 검토필요
 - 수출업체가 수출전 국내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시 통상은 동시 다분석에 의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나,
 - 일본의 경우 후생성 지정검사기관에서 명령검사로 지정된 단성분만 집중 검사함으로써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음
 - 그동안 한국에서 농약검사시 문제 없었으나 일본 도착후 재검사시 검출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
 - 향후 동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수출채소류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다분석 검사를 1차로 실시하고, 명령검사에 해당된 품목의 해당성분을 별도 검사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 - 또한, 단일분석장치인 MS 분석보다는 복수분석인 MS/MS 시스템 분석등을 통한 검사정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

☐ 발표 일자/ 출처 : 2015년 9월 16일자 후생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제공